

동반가족비자 DPM (1년) Visa de Dependencia (DPM)

동반가족 비자는 공무비자(OM), 외교관비자(DM), 의전비자(CM), 근로비자(NM1), 선교비자(NM) 그리고 학생비자(ES)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직계가족(배우자, 자녀)에게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단기거주비자에 해당함- Residencia Temporal)

- **아포스티유 발급 기관** : 서울 서초구 남부순화로 2258 외교센터 6층 (양재역 12번출구)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postille.go.kr/index.do?language=ko>

1. 비자 사유서 (Carta de solicitud de visa sin notarizar) - 법무공증 필요 없음 (스페인어로 작성)

해당 대사관의 영사과 앞 혹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 앞으로 신청자 혹은 위에 언급된 비자를 가지고 있는 해당 가족이 작성. 비자 신청인의 국적, 거주지, 직업, 도미니카공화국 방문 목적등을 기재, 동반 자녀가 있을 경우엔 모두 함께 기재. (예문 참고: 4페이지 참고)

2. 비자신청양식서 (Formulario de Visa)

대사관홈페이지 www.embadomkr.gob.do, 도미니카공화국 영사홈페이지 www.consuladord.com 에서 출력. 컴퓨터로 작성 혹은 읽기 쉬운 활자체로 작성하여야 하며, 빈 공간이 없이 모두 기재. (양쪽 검지 지문, 서명 포함 그리고 미성년의 경우도 서명란에 이름으로 표기) 출력이 어려울 경우, 대사관 비치용 사용 가능합니다.

3. 사진 (Una fotografia)

1 매 (사이즈 4cm x 5cm) 정면 사진으로 흰 바탕, 안경 미착용

4. 여권 원본 (Pasaporte Original)

최소 12개월 이상의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5. 초청가족인의 도미니카공화국 비자 혹은 거소증 그리고 여권 사본

(Copia de la Visa o Tarjeta de Residencia dominicana y copia del pasaporte)

도미공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구성원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비자, 거소증, 여권을 사본으로 제출

6. 주민등록증 (Documento Nacional de Identidad)

주민등록증 컬러 사본, 만약 출생 국가가 아닌 다른 제2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해당 국가의 거주증 사본 (미성년의 경우 불필요)

7. 범죄기록조회서(Certificado de No Antecedentes penales)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로 마지막으로 거주한 국가의 경찰청으로부터 확인 받은 문서 제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 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8. 기본증명서(Certificado Básico) 혹은 출생증명서(Acata de Nacimiento)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9. 건강진단서 (Cerficiado Médico)

신청인이 전염성이 있는 병력을 앓았던 적이 없음을 증명해야 함. 신청인이 마지막으로 거주한 해당 국가의 병원이나 보건당국으로부터 확인 받음.

(건강진단서 : 장티푸스, 세균성이질, B형간염 항원항체검사, 폐결핵, 매독/ AIDS)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10. 결혼증명서 (Acta de Matrimonio) 혹은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문서.

영문 가족 관계증명서의 경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에서 무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11. 보증서[Carta de Garantia]: OM,CM,DM 은 제외

도미니카공화국 현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합니다.

보증인은

(NM1:워킹비자) 취득인의 동반비자는 NM1 비자 취득시 NM1의 보증인이 되었던 사람, 회사)

(NM:종교) 취득인의 동반비자는 NM 비자 취득시 보증인이 되었던 사람 혹은 단체)

(보증인과 2인의 증인이 보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보증서 내용은 보증인이 비자 신청인에게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체류도중 일신상의 이유로 송환 또는 추방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에 있어서 보증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

➤ 도미니카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보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보증인 한 명 그리고 증인 2명이 서명한 보증서입니다.)

➤ 도미니카공화국 검찰청 인증 받아 오셔야 합니다

(Notarizada y legalizada en 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Dominicana)

➤ 보증인의 재정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합니다.

❖ 보증인의 재정증빙서류:

보증인의 은행잔고증명서(Carta Bancaria), 자동차소유등록증(Matricula de Vehículo), 부동산소유권증서(Titulo de la Propiedad en la República Dominicana) 등, 택 1 제출

Carta de Garantía por parte de la empresa o institución responsable del titular principal debidamente notarizada y legalizada en la Procuraduría General de la República, este documento debe de ser presentado por el solicitante junto a los demás documentos el día de su entrevista

en el consulado dominicano, es indispensable que esta carta de garantía contenga la siguiente cláusula, para que pueda ser aceptada por nuestra Misión Diplomática o Consular.

****아래 네모 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보증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 입니다. :**

CLAUSULA DE GARANTIA

“Garantizo que (nombre, nacionalidad, pasaporte o documento de identidad de los dependientes), son los dependientes del señor/a (nombre titular principal), el cual ocupa la posición de (cargo) en nuestra empresa, por lo que “Me hago moral y económicamente responsable al retorno de su país de origen, asumiendo pagar a favor del Estado Dominicano cualquier gasto en que dicha persona pueda incurrir durante su estancia en el país, o que se origine como consecuencia de su repatriación o deportación del mismo.”

12. 재정증빙서류(Documentos que demuestran solvencia económica): 아래 명시된 증명서 중 택 1

초청가족인(이미 비자를 소지한 가족)의 재정증빙서류

- 은행잔고증명서- 영문 증명서의 경우, 번역 불필요 (은행에 영문 요청 가능함)
- 재산증명서- 영문의 경우 번역 불필요.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 기타 신청인의 재정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일체의 것 -국문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

13. 가족관계증명서(Certificado Familiar) : (위 10번 항목 참고)

비자신청인의 자녀들의 경우 미성년자의 경우 신청인과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문, 영문 모두의 경우, 스페인어로 번역,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필요함

14. 비자 인터뷰 신청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전화나 이메일로 대사관에 인터뷰 신청일을 예약하며, 신청자 본인이 직접 인터뷰해야 함.

15. 비자발급 소요시간과 수수료 (모든 영사 업무는 오전만)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하여 비자가 승인된 것은 아니며, 신청접수는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인의 비자를 접수하고 검토하여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로 발송한다는 것을 의미함. 예상 소요시간은 최소 2-3주. 그러나 최종결정은 도미니카공화국 외교부에서 결정하며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은 통보를 받고,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됨. 즉, 주한도미니카공화국 영사직원에게 비자 승인 결정권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신청인이 비자를 취득하기 전까지는 환불이 안 되는 항공권을 구입하지 않기를 강력히 권유하며, 혹 비자 취득 소요시간이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미리 구입한 항공권에 차질이 생긴 경우에 대해서는 대사관의 책임이 없음을 미리 공고함.

인터뷰 당일 송금 영수증 지참 하셔서 오시길 바랍니다.

외화계좌인 관계로 인터넷 뱅킹은 어려우십니다.

가까운 KEB하나은행에 가셔서 송금하셔야 합니다.

- 수취인: 주한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
- 미화 U\$100.00
- KEB하나은행
- 계좌번호: 201-890010-11338

이 사유서는 이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가족 한 분이 가족들의 비자를 신청하는 내용이 되어도 되고, 신청인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도 됩니다.

반드시 사유서 내용에는 비자를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의 도미니카공화국 주민증 정보, 거소증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Carta de Solicitud de Visado

Seúl, Corea del Sur

날짜 de 월 del 년도

Señores

Embajada de la República Dominicana
en Corea del Sur

Luego de un cordial saludo, me dirijo a ustedes con el motivo de solicitar la expedición del Visado DPM con el nombre 신청인 이름, de nacionalidad coreana, portador del pasaporte de identidad No. 00000000 (여권번호) y residente en (현재거주지).

El motivo de esta solicitud se debe a que yo viajaré a la República Dominicana para resideit en 주소지와 이름 기재 등등 por 체류 기간 con (남편, 아내 등 직계가족만).

Asimismo, también solicito los visados DPM para mi familia:

신청인과의 관계	이름(Nombre)	여권번호 (No.Pasaporte)	국적 (Nacionalidad)	직업상태 (Ocupación)
Esposo/a(배우자)	XXX			
Hijo(아들) Hija (딸)	XXX			

Muy atentamente,

(Firma/본인 이름과 서명)
